

# 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  
학교법인 국제대학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국제대학교(국제대학교)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 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(국제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지적사항 없음		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1	확보 및 수익을 미충족		수익용재산
3. 학교 관련		지적사항 없음		
4. 부속병원 관련		해당없음		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  
2. 국제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  
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1년 4월 2일

학교법인 국제대학교

감 사 임 제 현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4551 호)

감 사 임 안 식

(임제현)  
(임안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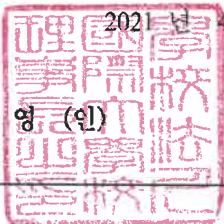
※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학교법인 국제대학교

이 사 장 손신영 (인)

2021년 4월 2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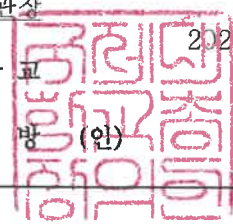


피감사 기관장

국 제 대 학 교

총 장 김 방 (인)

2021년 4월 2일



## 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국제대학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국제대학교(국제대학교)의 2020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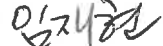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국제대학교(국제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국제대학교(국제대학교)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수익용기본재산 법정기준 및 법정수익률 미충족)


2021 년 4 월 2 일

학교법인 국제대학교

감사 임재현 

감사 임안식 

피감사자 (입회인)

이사장 손신영 

## 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국제대학교 이사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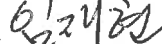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국제대학교(국제대학교)의 2020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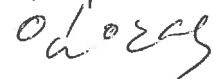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국제대학교(국제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국제대학교(국제대학교)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
2021 년 4 월 2 일

학교법인 국제대학교

감사 임재현 

감사 임안식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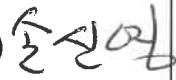

피감사자 (입회인)

사무처장 한봉희 

##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0 회계연도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<p>1. 법인일반업무회계 : 지적사항 없음.</p> <p>2. 법인수익사업회계</p> <p>가. 법정기준(연간 학교운영수익총액) 확보 여부</p> <p>나. 법정수익률(3.5%) 충족여부</p> <p>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</p>	<p>2. 법인수익사업회계</p> <p>가. 법정기준(연간 학교운영수익총액)확보여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수익사업회계의 다양한 수입원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며, 저수익 재산 처분을 위해 노력 중임.</li></ul> <p>나. 법정수익률(3.5%) 충족 여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수익사업회계의 수익 증대방안을 강구 중이며, 적합한 부동산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나 부동산 가격의 급증으로 현재 적합한 물건을 모색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</li></ul>
<p>피감사기관장 <b>학교법인 국제대학교 이사장 손 신 영</b> 직인 (사인) </p> 	



[별지 제4호 서식]

## 사학기관 재산상황 및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 중점 확인사항

감사 분야	감사 확인사항(지적사항 유형)	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
<b>1. 기본적 사항</b> [재무제표 신뢰성 검증]  법인일반업무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무제표가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「사립대학 예산 유의사항」</li> <li>•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「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」</li> </ul>
<b>2. 공통사항</b> [재산·회계감사]  법인일반업무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예산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 수입·지출 항목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</li> <li>2. 예산 성립전 예산의 집행 여부</li> <li>3.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(유용·횡령 여부 포함)</li> <li>4. 예산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적정성 여부</li> <li>5. 예산 전용 절차 및 규정의 준수 여부</li> <li>6. 예산 총계주의 준수 여부</li> <li>7. 예금 계좌 구분 관리의 적정성 여부</li> <li>8. 결산에 미반영된 부외계좌 운용 여부</li> <li>9. 수입 및 지출 내부통제의 적정성 여부</li> <li>10. 기금운용 관리 체계 마련 여부</li> <li>11. 대손상각 등(회수불가능 부실채권 및 고정자산 폐기)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여부</li> <li>12. 정기적 재물조사 등 자산관리 적정성 여부</li> <li>13. 공사·제조·구매·용역 등의 계약 원칙 준수 여부</li> <li>13. 보수규정의 적정성 및 규정에 따른 인건비, 수당 지급 여부</li> <li>14. 동일 성격 수당 중복 지급 여부</li> <li>15. 관련 증빙에 근거한 업무추진비 집행 여부</li> <li>16. 기채 허가서 상 상환재원 회계에서 상환되는지 여부</li> <li>17. 기채 자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</li> <li>18.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 여부</li> <li>19. 기타 중요한 확인사항</li> <li>20.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「사립대학 예산 유의사항」</li> <li>•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「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」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제4조 및 제9조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 제20조 및 제21조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제11조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제13조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제5조</li> 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29조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 제7조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제5조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 제26조 및 제29조, 제33조</li> 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의3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제32조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 제50조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 제35조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조</li> 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 및 제29조</li> 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</li> </ul>

<b>사학기관 재산상황 및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 중점 확인사항</b>		
감사 분야	감사 확인사항(지적사항 유형)	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
<b>3. 법인일반업무회계 또는 수익사업회계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교 귀속 선급법인세 및 선급지방소득세 적시 진출 여부</li> <li>2.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등 지급 여부</li> <li>3. 차입 시 이사회 심의·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여부</li> <li>4. 기본재산 매도·증여·교환·용도변경 및 담보제공 시 이사회 심의·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여부</li> <li>5. 기본재산 취득 시 이사회 심의·의결 여부</li> <li>6. 기본재산의 소유권 및 권리확보 여부</li> <li>7.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절차 및 임대보증금·임대료 관리 적정 여부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임대계약서 작성, 임대료 산정, 임대보증금 별도 구분 관리 등</li> </ul> </li> <li>8.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등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기준 충족 여부</li> <li>-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기준 충족 여부</li> <li>※ 수익용기본재산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검토</li> <li>- 학교운영경비부담률 기준 충족 여부</li> </ul> </li> <li>9. 법인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대납하거나 학교수입을 법인에서 세입처리하는지 여부</li> <li>10.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도 준수 여부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「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」</li> 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29조</li> 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26조</li> 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</li> 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</li> 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16조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4조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조</li> <li>• 「대학설립·운용규정」 제7조 및 제8조</li> <li>• 「사이버대학설립·운용규정」 제7조 및 제8조</li> 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29조</li> <li>•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 제47조</li> </ul>
<b>4. 교비회계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잉여금처리원칙 마련 여부</li> <li>2.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</li> <li>3. 건축적립금 적립 및 기채원리금 상환의 목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였는지 여부(건축적립금 전출 한도 준수 여부 포함)</li> <li>4. 기금 적립 목적의 적정성 여부</li> <li>5. 등록금선수금 학기 개시 전 집행 여부</li> <li>6. 등록금 및 수강료 반환규정에 따라 적절히 반환하였는지 여부</li> <li>7. 입학전형료 미집행 잔액 반환 여부</li> <li>8.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</li> <li>9. 교육용기본재산 담보제공 여부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「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」</li> 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3</li> <li>•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제15조</li> 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2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 제20조</li> <li>• 「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6조</li> <li>•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2조의3</li> <li>•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제15조</li> 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</li> </ul>

[별지 제4호 서식](계속)

## 사학기관 재산상황 및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 중점 확인사항

감사 분야	감사 확인사항(지적사항 유형)	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
5. 부속병원회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불요불급한 의료장비 구입 후 미 활용 방치 여부</li><li>2. 지급근거 없는 진료자문위원수당 지급여부</li><li>3.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일반회계를 경유하여 대학으로 진출하는지 여부</li><li>4. 부속병원의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대납하는지 여부</li>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의료장비 현황</li><li>• 진료자문위원수당 지급 현황</li><li>•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</li><li>• 「사립학교법」 제29조</li></ul>